

대전 서구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 사업 공고

관내 소상공인에게 컨설팅 및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여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4. 28.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1.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 50개소

※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및 제3조(적용범위)에 해당하여야 함

○ 지원 제외대상

- (사업장 미신고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
- (2023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준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자상거래업) 실제 별도 사업장 미운영자
- 프랜차이즈 직영 및 가맹점(가맹사업정보시스템 등록업체)
- 사실상 영업하지 않는 사업자로 연매출액 0원 이하인 사업자(2022년)
- 최근 3년 서구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참여업체<나들가게(골목슈퍼) 시설개선 지원사업, 휴·폐업 소상공인 영업재개 지원사업, 착한가격업소 소규모 시설 개선 지원사업,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 기폐업자, 폐업 후 재창업 예정자 및 단순 사업장 이전하려는 업체

2. 지원범위

○ 전문가 집중 컨설팅 지원(전문가 1:1 방문 상담 및 컨설팅)

- 마케팅(판매전략, 홍보, 점포운영, 고객관리 등 경영 전반 점검)
- 재무관리(재무, 회계, 세무 등)

○ 사업장 시설 개선 비용 지원

- 전문가 집중 컨설팅과 연계하여 사업장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며, 점포별 여건 및 환경을 고려하여 옥외간판, 인테리어, 출입문, 진열대 등 점포 시설 전환 지원

지원 분야	세부 지원사항	비고
옥외 간판교체	· LED간판, 판형(FLEX) 간판, 기타	· 단, 단순 집기류 및 소모품 지원 불가 · 지원액 내에서 2개 이상의 분야 신청 가능
인테리어 개선	· 전기조명공사, 천장, 바닥, 기타	
상품배열 개선	· 진열대, 냉장진열대, 기타	
기타사항 개선	· 출입문, 기타	

- ※ 1. 옥외광고의 경우,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지 않는 광고물만 지원
 2. 화장실은 판매시설과 동일 실내공간에 위치한 경우에만 지원
 3. 판매상품 또는 이에 소요되는 원자재 지원 불가
 4. 단순 집기류 및 소모품(의자, 테이블 등)지원 불가
 5. 시설개선 지원 통보 전에 주문하거나 설치한 시설·장치 지원 불가
 6. 검토결과 지원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시설·장치 지원 불가

○ 사 업 비: 총 125,000천원

- 전문가 집중 컨설팅 비용: 500천원 × 50개소 = 25,000천원(컨설턴트에게 지급)
- 시설 개선 비용: 업소당 최대 2,000천원 × 50개소 = 100,000천원

※ 1. 업소별 최대 2,000천원 지급

단, 총 사업비의 70% 이내(공급가액) 지원하며, 자부담 공급가액의 30% 이상 및 부가가치세 부담

2. 지원 예시: 시설 개선을 위한 간판 및 기타시설 지원 시

간판 및 기타 시설		지원금액		자기부담금
3,146천원 (공급가액: 2,860천원) (부가세액: 286천원)	=	2,000천원(최대) (공급가액의 70%이내)	+	1,146천원 (공급가액의 30% 이상 + 부가세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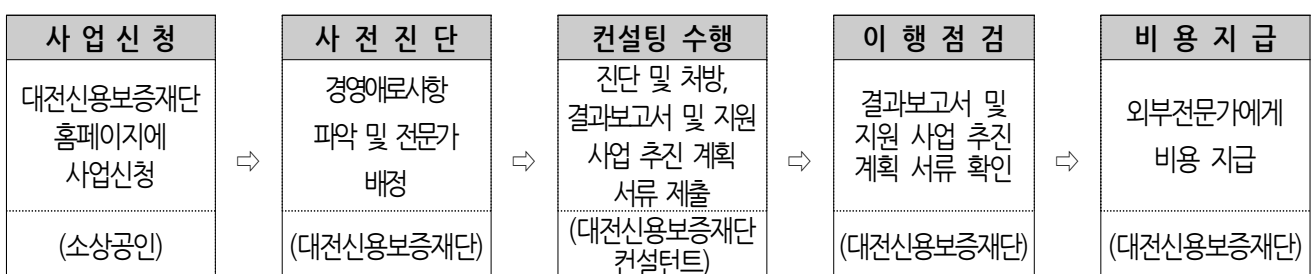
3. 사업 신청 업체가 비용 선결제 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지출 증빙 자료 및 결과보고서 제출하여 비용 청구

○ 사 업 량: 50개 업소(예산 범위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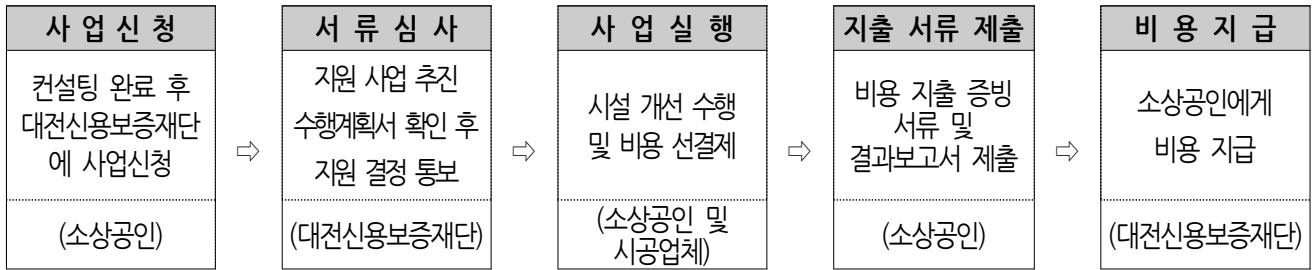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에 대하여 지원

3. 추진 절차

○ 전문가 집중 컨설팅



○ 시설개선 비용 지원



4. 공고 및 접수

- 공고·접수기간: 2023. 4월 28일 ~ 5월 19일
- 접수방법: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접수(<https://www.sinbo.or.kr/edu>)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명	비 고
1	사업지원신청서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2	사업자등록증명원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4	대표자 신분증 사본	
5	2022년 매출 증명서	1. 일반과세자 및 간이 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2.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3. 법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상태표 (2022. 1.~2022.12.)
6	상시근로자 확인서류(공고일 기준 이후 발행본)	1.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
7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해당
8	건축물 소유자의 시설개선 동의서	임차인 해당
9	견적서(1개 지원 분야 당 소요금액 1,000천원 초과 시 비교견적서 1부 포함)	
10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시공업체 업태 확인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미제출 시 심사에서 제외됨

5. 심사 및 선정

- 심사대상
 - 사업 목적 및 지원내용에 부합하게 신청한 업소
 - 지원요건에 해당하며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한 업소
- 심사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기대효과 등
 - 점포 매출액: 연매출(환산)액
 - (2022년 연매출환산액) 증빙 매출액 ÷ 영업일(개업일 기준) × 365일
 - 사업자등록일 기준 영업기간

- 임대 및 자가 여부

○ 선정방법

- 대전신용보증재단이 심사표에 따라 선정하되 선정대상자가 사업 포기시 후순위자 선정

○ 선정결과: 대전신용보증재단이 업소 개별 통보(5월 중) 및 결격자 별도 통보

6. 전문가 집중 컨설팅 지원

○ 사전 경영 애로사항 진단, 전문가 배정 및 컨설팅 수행: 2023. 6월~7월

○ 컨설팅은 사업장 방문이 원칙이며, 1회당 2시간, 2회 컨설팅 제공

○ 컨설턴트는 사업장 시설 개선을 위하여 **시설개선 자문하며(필수)**, 사업 선정자는 지원사업 추진 수행 계획서를 작성하고, 컨설턴트는 선정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계획서 작성을 도와야 하며 컨설턴트가 계획서를 대전신용보증재단에 제출

○ 사업 선정자는 컨설팅 완료 후 시설 개선 사업수행을 위하여 견적서(1개 시설당 부가가치세 포함 1,000천원 초과 시 비교견적서 제출), 지원 사업 추진 수행 계획서, 시공업체 사업자 등록증, **신규 통장 사본**을 컨설턴트에게 제출하며, 컨설턴트는 컨설팅 비용 입금 통장 및 컨설팅 결과보고서와 함께 대전신용보증재단에 자료 제출

7. 시설 개선 비용 지원

○ 대전신용보증재단 시설 개선 비용지원 신청 자료 검토 및 수행 통보: 2023. 6월~8월

- 시설 개선 사업 추진은 대전신용보증재단이 사업 선정자에게 사업 수행 통보를 한 후,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 수행 통보 이전에 추진한 시설 개선 사업은 지원 불가**

○ 시설 개선 실시: 2023. 6월~10월

○ 시설 개선 실시 후 지원금 청구 및 수령: 2023. 7월~10월(수시 확인 지급)

- 시설 개선 후 지원금 청구 시 사업 선정자는 지원 사업 추진 결과 보고서, 지원금 지급 청구서, 전자세금계산서,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이체확인증, 입출금내역이 확인되는 통장 사본을 **시공 완료 후 14일 이내** 대전신용보증재단에 제출

- 대전신용보증재단은 제출자료 일체를 확인하여 결격사유가 없다고 통보한 날짜의 **5일 이내** 시설 개선 비용을 사업 선정자에게 지급하며, 수정 및 미비 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정본 일체를 확인하여 결격사유가 없다고 통보한 날짜의 **5일 이내** 시설 개선 비용을 사업 선정자에게 지급

8. 기타사항

○ **상기 사업 추진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연장될 수 있음**

○ 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인정보수집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 지원대상으로 선정 후 **아래 사유 중 1개 이상 발생 시 지원취소 가능**

- 사업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경우

- 지원 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설 개선 시공한 경우
- 결과보고서 및 기타 증빙 자료가 부실하거나 과제 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지정 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지원사업 추진 수행 계획서 제출 이후 제작업체, 제작 기간, 내용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시설개선 수행 통보 후 3개월 이내 시설개선 및 비용 지급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타 시·도 사업장 이전
- 점포 양수·도(폐업) 등 중대 사유 발생
- 기타 신용보증재단 및 서구청의 판단에 의거 지원 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지원사업 추진 수행 계획서 제출 이후 시설개선 단위 사업의 추가 및 변경은 불가능
- 신청서 제출 시 신청 지원 금액은 지원사업 추진 수행 계획서 제출 시 신청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신청 지원 금액 하향 신청은 가능)
- 지원 포기의 경우 포기 신청서를 제출(별도 양식)
- 사업 포기자 발생 시 후순위자 중에서 선정
- 지출 증빙 제출서류는 은행(또는 ATM)에서 발행하는 입금증 또는 입금통장 내역 사본, 입금자와 수령자 및 각 계좌번호가 명확하게 표기
-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 원칙이며, 사업 선정자는 시공업체 선정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업체로 선정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사항: 대전신용보증재단 담당자(042-380-3904)

붙임 1. 사업 신청시 제출서류 목록 1부.
2. 지원제외업종 목록 1부. 끝.

『대전 서구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 사업』 사 업 지 원 신 청 서

1. 신청자 개요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개시일	년 월 일	상시 종업원수	명
업종/업태		연매출(환산)액	
업체주소		자택주소	
대표자명		휴대전화	

2. 사업신청 개요

세부지원내용	☒ 컨설팅(필수) ☒ 시설개선(필수)		시설개선 신청항목 (2개 이상 신청가능)	예시)간판, 어닝, 바닥, 도배 등		
점포면적		m ²	최근 3년 유사사업 진행여부	☐ 해당 ☐ 미해당		
시설개선 예상소요비용	총액 (공급가+ 부가세)	원	공급가	원	부가세	원
예상소요기간	2023년 월 일 ~ 2023년 월 일					

동 사업 공고문의 모든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지원 취소 사유가 1개 이상 발생하였거나, 작성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최근 3년간 대전 서구 유사과제 수혜자로 확인되거나, 필수서류를 누락했을 경우, 선정제외 및 지원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에 동의합니다.

- 붙임
1.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공고일 기준 1개월 내)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3.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4. 2022년 매출 증명서 1부
 5.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1부
 6.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7. 건축물 소유주 시설 개선 동의서 1부
 8. 견적서 1부(1개 지원분야 당 소요금액 1,000천원 초과시 비교견적서 1부 포함)
 9.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023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날인)

대전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 ☐ 수집 · 이용목적 :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 사업 신청 및 선정 관련
- ☐ 수집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업력, 매출, 이메일, 사업자등록증 정보 등
- ☐ 이용범위 :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합니다.
- ☐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 처리목적 달성 시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
- ☐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지원사업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정책 수립, 집행, 결과 확인, 만족도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다른 부서, 대전 서구청 및 대전신용보증재단 등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원활한 서비스제공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또한, 향후 대전 서구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대전 서구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 사업 점포의 이미지 훼손 및 위상과 품격을 저해하는 경우, 공고에 기재된 지원 범위를 초과하는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등으로 인하여 지원대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위 동의 및 서약자(신청인) 성 명 : _____ (서명)

대전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귀하

시설개선 동의서

상 호 명		업 종	
대표자명		전화번호	
소 재 지			
시설개선 내 용			

본인이 임대한 위 건물(토지)에 대해서 임차인인 위의 사업장 대표자의
「2023년 대전 서구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 사업」 시행에 따른 점포 시설
개선에 동의합니다.

2023. . .

동의자(임대인) 성 명: (서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대전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귀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표준산업분류	업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무도장운영업(91291)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재해자금 융자 허용 업종 >

재해피해 소상공인	융자 허용 업종
공통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특구지역 소재	(추가)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특별재난지역 소재	(추가)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